

□ 상습폭력 남편 살해 이순심씨 10년 구형

94.6.16

“과잉방어나...정당방위냐” 검찰-변호인 뜨거운 공방

수원 / 홍용덕 기자

검찰이 지난 14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순심(4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10년을 구형하자 변호인단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배금자 변호사 등 8명)이 이씨의 살인죄 적용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핵심은 이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현행법상 정당방위 구성요건은 생명·신체·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불법한 힘에 대해서 법조치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해상황을 피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항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살인행위는 이런 법률상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수원지검 박해운 검사는 “숨진 남편 이씨가 아내 이씨를 때리고 집안 기물을 부순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시의 남편 이씨는 자는 상태에서 더이상 아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현재의 위해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을 찢른 행위는 명백한 과잉방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단은 이씨의 경우 현재의 위해상황이란 계속되어온 남편의 폭력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항시적 위해에 해당하며 이씨의 행위 또한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불가피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씨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구타 순간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며 “20여년 동안 되풀이돼온 남편의 폭력에 의해 온가족이 피해를 받은 그 자체가 필연적인 정당방위의 구성요건을 구성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1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이순심씨 석방대책위원회’는 그동안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죄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검찰의 구형량에 반발해 구속석방 운동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